##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89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위성곤·모경종·허 영

주철현 · 박희승 · 한병도

서영교 · 김한규 · 이개호

박정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사무기구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 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그러나 동법에서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4차례나 반복하고,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상설조직인 것을 고

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제도개선 과제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774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제18조의2의	<u>&lt;삭 제&gt;</u>		
<u>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u>			
지 효력을 가진다.			